

#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

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7판)」를 우리 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함

## 【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(1.30.부터)】

구분	방역당국 기준	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(학교·학원 적용)
착용 의무	▶ 감염취약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	▶ 학교 통학, 학원 이용, 행사체형 활동 등과 관련된 <b>단체 버스</b> 등의 <b>차량 이용</b> 시 탑승자
착용 권고	① 코로나19 <b>의심 증상*</b> 이 있거나, 코로나 19 <b>고위험군**</b> 인 경우 *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**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	좌동
	② <b>코로나19 의심 증상</b> 이 있는 사람 또는 <b>고위험군과 접촉</b> 하는 경우	좌동
	③ 최근 <b>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</b> 했던 경우 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	좌동
	④ 환기가 어려운 <b>3밀(밀폐·밀집·밀접)</b>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	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<b>다수가 밀집</b> 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되어 있는 경우 ※ 현장 체험학습, 수학여행 등 포함
	⑤ <b>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밀 생성행위</b> 가 많은 경우	《사례별 권고 기준》 1. 교실, 강당 등에서 <b>합창</b> 수업 시 2. <b>실내체육관 관중석</b> 에 <b>다수가 밀집한 상황</b> 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에서 <b>응원 함성·대화</b> 등으로 인한 <b>비밀 생성 행위</b> 가 많은 경우 3.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·졸업식 등에서 <b>교가·애국가</b> 등을 <b>합창</b> 하는 경우 4. 그 밖에 <b>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밀 생성행위</b> 가 많아 <b>교육시설의 장(학교장 등)</b>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[참고]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FAQ 1부

## 참고

## 학교·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

### Q1. 학교(학원 포함)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?

- 방역당국의 「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에 따라 1.30(월)부터 **학교(학원 포함)의 실내** 마스크 착용이 **의무에서 자율적 착용**으로 조정됨
- 다만,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**의무를 유지**하고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**적극 권고** 하고 있음

<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(방역당국 제시)>

- ① 코로나19 **의심 증상\***이 있거나, 코로나19 **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**하는 경우  
\*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**고위험군\***이거나, 코로나19 **고위험군과 접촉**하는 경우  
\*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**확진자와 접촉**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**에 있는 경우
- ⑤ **다수가 밀집한 상황**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**비밀 생성행위**가 많은 경우

### Q2. 학교(학원)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?

- 「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에 따라 해당 **시설(학교·학원)의 관리자·운영자**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사항에 대한 **방역 지침을 게시**하고 **안내(관리)** 하도록 하고 있음

### Q3.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?

- **의무**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**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**되는 반면,  
- **권고**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**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**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

### Q4. 학교(학원)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?

- 등교·등원 등을 위한 **대중교통수단** 또는 통근·통학차량(직접운영 포함), 수학여행,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**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**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

**Q5.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이란?**

-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
  - ※ 방역당국 예시 장소 : 엘리베이터 등

**Q6.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?**

-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,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

- ▶ 실내 음악수업·입학식·졸업식·공연·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
- ▶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(참가선수는 제외)

※ 현장체험학습,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,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

**Q7.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·합창 시 "행사 전체시간"이 아닌, "함성·합창을 할 때"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?**

- 현장에서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, 반복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
  -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함

**Q8.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?**

-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
  - 만성폐질환, 만성심장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신질환, 신경-근육질환
  - 당뇨, 비만, 면역저하자(면역억제제 복용자)

**Q9.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?**

-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여,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임
- 참고로,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

<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>

대 상
의심 증상자
고위험군(60세 이상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)
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자를 접촉하는 자
확진자의 접촉자

**Q10.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?**

-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(1.30. 시행)사항을 반영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」를 개정하면서, **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**(제7판, 1.27.)
  -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(학원)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**지속적인 지도·홍보**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
    - ※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**기숙사, 양치실, 급식실**의 경우 **수시로 환기**하고, 비말 차단을 위한 **대화 자제 지도**, 기침예절,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

**Q11.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?**

- 이번에는 '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(1.30. 시행)'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,
  -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,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**새학기 시작 전에** 자가진단 앱, 발열검사, 환기·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**안내**할 계획임
- 따라서,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 (제8-1판\*)을 준수해야 할 것임

\* 대학의 경우 현행 방역지침은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」(22.9.26.수립)